

대구예술대학교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규정

(제정 2010.08.02. 교무위원회)

제 1 장 부전공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부전공 이수신청) ① 부전공 이수는 1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.

② 부전공 이수는 매 학기말 소정의 기간내에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부전공의 이수 승인을 받은 자가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부전공과정에서 탈락되며 기 취득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처리한다.

④ 부전공 이수를 승인 받은 자가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종료 후 7일 이내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적(자퇴)된 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 이때 부전공으로 기이수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처리한다.

제4조 (부전공 선택범위) 부전공의 선택범위는 유사전공을 대상으로 하며 학기 전에 정한다.

제5조 (부전공 이수과목)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에서 20학점 이상을 선택 이수하되 따로 지정된 부전공 필수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부전공 지정과목이 제1전공과목과 중복될 때에는 제1전공과목으로만 인정한다.

제 2 장 복수전공

제6조 (복수전공 이수신청) ① 복수전공 이수는 1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.

② 복수전공 이수는 매 학기말 소정의 기간 내에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복수전공 이수 허용인원은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시험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.

제7조 (복수전공 선택범위) 복수전공의 선택범위는 유사전공을 대상으로 하며 학기전에 정한다.

제8조 (복수전공 이수과목)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에서 40학점 이상을 선택 이수하되 따로 지정된 복수전공 필수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제9조 (복수전공의 포기) ① 복수전공 이수를 승인 받은 자로서 사정에 의하여 이수를

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학기 수업종료 후 7일 이내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적(자퇴)된 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② 포기한 복수전공의 기이수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처리한다.

제10조 (복수전공의 이수년한 및 졸업) ① 복수전공자의 학위수여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,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한다. 다만, 중도 포기자는 제1전공과 졸업요건이 충족된 복수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.

②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복수전공의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